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발신인: 오민한

수신인: 강용원

1. 귀하가 보낸 이행최고서는 2024. 9. 20.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사실 엄밀히 말해 본인은 오국한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신림동 상가는 애초부터 본인 소유로, 처음 신림동 상가를 매수할 당시 신림동 상가의 전 소유자 이경주와 본인 간의 다툼이 있어 사촌 형인 오국han에게 2015. 9. 17. 매수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오국han이 마치 신림동 상가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나일오와 귀하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3. 작년에 오국han과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신림동 상가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당초부터 본인 소유였기에 제가 양수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4. 주변에 물어본 결과 '신탁자인 본인이 명의를 이전받은 것이 오국han의 일반채권자에게는 문제될 여지가 있어도, 신림동 상가 및 포천시 임야에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던 귀하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정말 만에 하나 귀하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저로서는 이미 그 재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세월이 오래된 까닭에, 일부 원래대로 돌려놓을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귀하에게 추가적인 금전지급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본인 역시 오국han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만일 제가 금전지급책임을 져야 한다면 본인의 채권 합계금 5,000만 원(신림동 상가 매수대금 4,000만 원, 2022. 7. 18. 자 대여금 1,000만 원)으로 귀하의 채권을 소멸시키겠습니다.

[첨부 :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1부]



2024. 9. 30.

오민한



본 우편물은 2024-9-30

제792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서우체국장

서울강
서우체
국장인